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안전인증 대상 중 '추락 또는 낙하방지망' 제외 알림

1. 관 련:
 가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및 제42조 개정('17.12.28., 시행 '18.12.29.)
 나. 「안전인증 ·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」 개정('18.6.29., 시행 '18.12.29.)
 다. 「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」 개정('18.6.29., 시행 '18.12.29.)

2. '18.12.29.부터 안전인증 대상 중 '추락 또는 낙하방지망'이 제외되고, 「한국산업표준」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된 관련 규정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 *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: 추락방호망,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, 수직형 추락방망

<주요 개정내용>

□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□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2조제3항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□ 「안전인증 ·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제19호 아목(추락 또는 낙하방지망) <삭 제>

3. 이에, 궁금하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'18.12.29.부터 '추락 또는 낙하방지망'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성능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: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Q&A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1,000대 건설업체,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

전문위원	서재민	공업사무관	신백우	산업안전과장	전결 2018. 12. 21. 고광훈

협조자

시행 산업안전과-5323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산업안전과 /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733 팩스번호 044-202-8092 / jmseo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"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